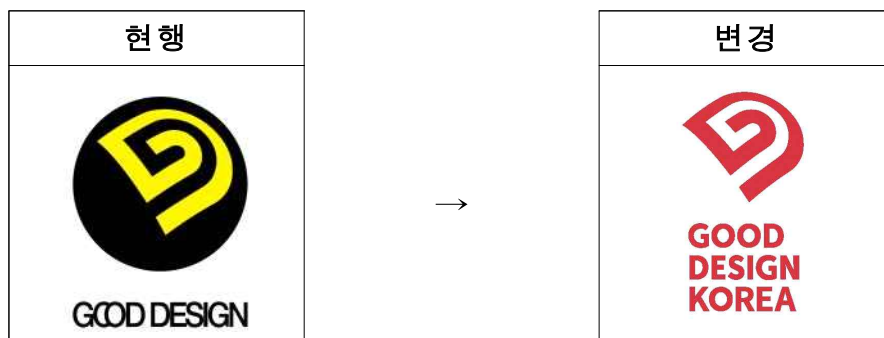


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수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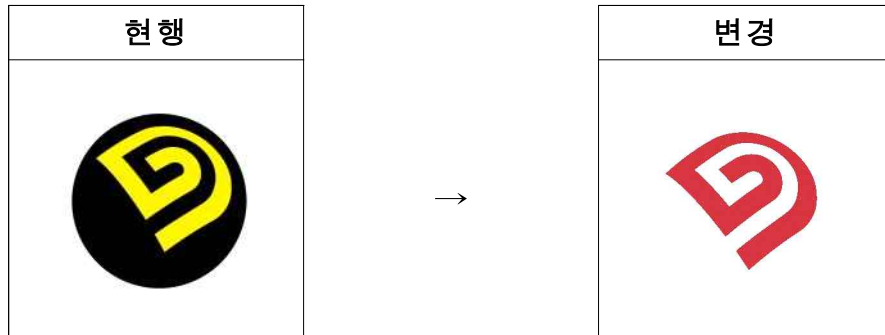
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 “우수산업디자인표지·작도법·표시방법(제8조 관련)”에 있는 우수 산업디자인표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
- * 표지의 형태 변경, 주색과 최소크기규정 변경, 보조색 변경, 전용색상 변경, 작도법 변경, 표시방법 변경
- * 현행 표지의 형태는 검정색의 원형 삭제 및 기울기 변경
- * 현행 주색인 노랑 및 검정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고, 현행 최소크기규정을 크기 6mm에서 7mm로 변경 및 화면 활용시 최소크기 표기
- * 전용색상의 보조색 별색은 현행 PANTONE COLOR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동일하나 색상은 변경
- * 형태 변경에 따른 작도법, 표시방법 변경(안 별표 제8조 관련)* 표지의 형태 변경, 주 색과 최소크기규정 변경, 보조색 변경, 전용색상 변경, 작도법 변경, 표시방법 변경
- * 현행 표지의 형태는 검정색의 원형 삭제 및 기울기 변경
- * 현행 주색인 노랑 및 검정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고, 현행 최소크기규정을 크기 6mm에서 7mm로 변경 및 화면 활용시 최소크기 표기
- * 전용색상의 보조색 별색은 현행 PANTONE COLOR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은 동일하나 색상은 변경

[별지 제2호 서식] “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”에서 사용하는 우수 산업디자인표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

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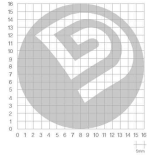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수산업디자인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] <개정 2013.3.23.> 우수산업디자인표지 · 작도법 · 표시방법 (제8조관련) 1. 표 지 (주 색)  (최소크기규정)  (보조색)  가. 전용색상 － 색상은 별색(PANTONE COLOR)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또는 단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 전용색상(주색)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별 색</th><th>4원색</th></tr><tr><td>검 정</td><td>PANTONE Process Black C</td><td>K100%</td></tr><tr><td>노 랑</td><td>PANTONE Process Yellow C</td><td>Y100%</td></tr></table> 전용색상(보조색)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별 색</th><th>4원색</th></tr><tr><td>빨 강</td><td>PANTONE 1797C</td><td>C100% M100% K10%</td></tr><tr><td>파 랑</td><td>PANTONE 2728C</td><td>C100% M70%</td></tr><tr><td>은 색</td><td>PANTONE 877C</td><td>K40%</td></tr><tr><td>금 색</td><td>PANTONE 873C</td><td>C30% M30% Y60% K10%</td></tr></table> 나. 크 기 －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크기는 적용매체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단, 최소크기는 위에 명시된 최	구 분	별 색	4원색	검 정	PANTONE Process Black C	K100%	노 랑	PANTONE Process Yellow C	Y100%	구 분	별 색	4원색	빨 강	PANTONE 1797C	C100% M100% K10%	파 랑	PANTONE 2728C	C100% M70%	은 색	PANTONE 877C	K40%	금 색	PANTONE 873C	C30% M30% Y60% K10%	[별표] 우수산업디자인표지 · 작도법 · 표시방법 (제8조관련) 1. 표 지 (주 색)  (최소크기규정) 7mm (인쇄) 41px (화면) (보조색)  가. 전용색상 － 색상은 별색(PANTONE COLOR)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 또는 단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. 전용색상(주색)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별 색</th><th>4원색</th><th>화 면</th></tr><tr><td>빨 강</td><td>PANTONE 186 C</td><td>M100% Y81% K4%</td><td>R 204 G 0 B 51</td></tr></table> 전 용 색 상 (보 조 색)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별 색</th><th>4원색</th><th>화 면</th></tr><tr><td>회 색</td><td>PANTONE 877C</td><td>K60%</td><td>R 204 G 204 B 204</td></tr><tr><td>금 색</td><td>PANTONE 873C</td><td>C30% M30% Y60% K10%</td><td>R 204 G 153 B 102</td></tr><tr><td>검정색</td><td>PANTONE BlackC</td><td>K100%</td><td>R 0 G 0 B 0</td></tr></table> 나. 크 기 －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크기는 적용매체의 특성과 크기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단, 최소크기는 위에 명시된 최	구 분	별 색	4원색	화 면	빨 강	PANTONE 186 C	M100% Y81% K4%	R 204 G 0 B 51	구 분	별 색	4원색	화 면	회 색	PANTONE 877C	K60%	R 204 G 204 B 204	금 색	PANTONE 873C	C30% M30% Y60% K10%	R 204 G 153 B 102	검정색	PANTONE BlackC	K100%	R 0 G 0 B 0
구 분	별 색	4원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 정	PANTONE Process Black C	K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 랑	PANTONE Process Yellow C	Y1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별 색	4원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빨 강	PANTONE 1797C	C100% M100% K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파 랑	PANTONE 2728C	C100% M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은 색	PANTONE 877C	K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 색	PANTONE 873C	C30% M30% Y60% K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별 색	4원색	화 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빨 강	PANTONE 186 C	M100% Y81% K4%	R 204 G 0 B 5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별 색	4원색	화 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 색	PANTONE 877C	K60%	R 204 G 204 B 2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 색	PANTONE 873C	C30% M30% Y60% K10%	R 204 G 153 B 10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정색	PANTONE BlackC	K100%	R 0 G 0 B 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소크기규정에 따른다.

2. 작도법



3. 표시방법

가. 제품에 직접 인쇄 또는 각인할 경우

(방식 1)



(방식 2)



(방식 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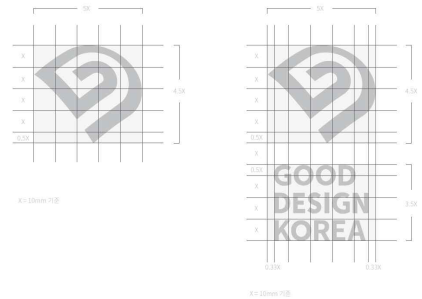


나. 별도로 인쇄하여 붙일 경우



소크기규정에 따른다.

2. 작도법



3. 표시방법

가. 제품에 직접 인쇄 또는 각인할 경우

(방식 1)



(방식 2)



(방식 3)



나. 별도로 인쇄하여 붙일 경우



현행	개정안
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 서식]<개정 2012.10. 5.> 제 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천연색 사진 (101mm × 76mm) 상품명: 브랜드명: 형식명: 회사명: 디자이너명: 위 상품은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직인	■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 서식] 제 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 천연색 사진 (101mm × 76mm) 상품명: 브랜드명: 형식명: 회사명: 디자이너명: 위 상품은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직인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혁신성장실 엔지니어링디자인과	
연 락 처	044-203-4552